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가단50643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변론 종결2022. 8. 18.

판결 선고2022. 10.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2머538858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2. 6. 23.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9,990,258원 및 그중,
 - 가. 33,900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1,214,980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3,888,906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라. 6,612,806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마. 3,677,323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바. 10,000,000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사. 4,000,000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3. 29.까지 연 10.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C에 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고,

피고 D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12. 16.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C에게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48444호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소송종료선언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22머538858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는 2022. 5. 27.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22. 6. 8. 원고에게, 2022. 6. 2. 피고 D에게 각각 송달되었으며(피고 C에 대하여는 송달불능되었다), 피고 C는 2022. 6.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D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22.

6. 22.을 경과함으로써 확정되어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무의 이행과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결정에서 분리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결정 내용이 분리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 D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29,990,258원{= 신용카드

일시불 34,985원(= 원금 900원 + 연체원금 33,000원 + 연체료 995원) + R.L.S 1,254,413원(=

원금 895,068원 + 수수료 5,026원 + 연체원금 319,012원 + 연체수수료 28,202원 + 연체료

6,205원) + 카드론(1) 3,986,220원(= 연체원금 3,888,906원 + 연체수수료 79,061원 + 연체료

18,253원) + 카드론(2) 6,758,847원(= 연체원금 6,612,806원 + 연체수수료 113,689원 +

연체료 32,352원) + 카드론(3) 1,865,158원(= 연체원금 1,815,172원 + 연체수수료 41,900원 +

연체료 8,086원) + 카드론(4) 1,913,427원(= 연체원금 1,862,151원 + 연체수수료 43,009원 +

연체료 8,267원) + 카드론(5) 10,126,631원(= 연체원금 10,000,000원 + 연체수수료 125,882원

+ 연체료 809원) + 카드론(6) 4,050,667원(= 연체원금 4,000,000원 + 연체수수료 50,667원)} 및

그중 신용카드 일시불 원금 33,900원(= 900원 + 33,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R.L.S 원금 1,214,980원(=

895,968원 + 319,012원)에 대하여 같은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카드론(1) 원금 3,888,906원에 대하여 같은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카드론(2) 원금 6,612,806원에 대하여 같은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카드론(3), (4) 원금

3,677,323원(= 1,815,172원 + 1,852,151원)에 대하여 같은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카드론(5)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2022.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카드론(6) 원금 4,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2022.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3. 29.까지 연 1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위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2. 6. 23. 확정되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수

별지